정보통신연구소 규정

제정 2001. 8. 16.
제2차 개정 2006. 12. 4.

제1장 총칙

(신설 2006.12.4)

제1조(명칭) 본 연구소는 상지대학교 부설 정보통신연구소(이하 "연구소 "라 한다)라 한다.
(조 개정 2006.12.4)

제2조(목적) 본 연구소는 정보통신기술을 연구하여 산학일체를 기하고 정보기술 및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(조 개정 2006.12.4)

제3조(소재) 본 연구소는 상지대학교내에 둔다.
(조 개정 2006.12.4)

제4조(사업) 본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1.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산업체의 실태조사 및 기술진단
2.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자문, 기술협력 및 훈련지도
3. 정보통신기술의 공업화, 산업화에 대한 계획, 설계 및 연구용역 활동
4. 정보통신기술 연구자료의 간행, 연구발표회, 강연회, 강습회 개최
5. 국내외 학술 및 기술연구 기관과의 정보교환
6. 저명 국내·외 학자의 초청 및 방문 공동 연구
7. 기타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부대사업

(조 개정 2006.12.4)

제5조 삭제 (2003.12.22)

제2장 조직

(신설 2006.12.4)

제6조 삭제 (2003.12.22)

제7조 삭제 (2003.12.22)

제8조 삭제 (2003.12.22)

제9조(연구소장) ① 연구소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중에서 총장이 임면한다.
②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.
③ 연구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중임할 수 있다.
(조 신설 2006.12.4)

제10조(운영위원회) ① 본 연구소에는 연구원의 임면, 연구업무,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,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 (개정 2006.12.4)
② 운영위원은 본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 (개정 2006.12.4)
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 (개정 2006.12.4)
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수는 연구소장을 포함하여 5-7명으로 하며, 동일학과 교수가 과반수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(개정 2006.12.4)
⑤ 삭제 (2006.12.4)
(조 개정 2006.12.4)

제11조(간사) 본 연구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간사를 두되, 연구소장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 중에서 위촉하거나 별도의 사무직원을 임면할 수 있다.
(조 신설 2006.12.4)

제12조(연구원 등) 연구원 등 임용에 관한 사항은 연구교수·연구원임용규정에 따른다.
(조 신설 2006.12.4)

제13조(연구보조원) 연구원의 업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으며, 연구소장이 임면한다.
(조 신설 2006.12.4)

제3장 회의
(신설 2006.12.4)

제14조(회의) ① 연구소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정리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
③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정의 개정과 연구원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된다.
(조 신설 2006.12.4)

제4장 재정
(신설 2006.12.4)

제15조(재정) 본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1. 교외 연구비와 수탁 연구비
2. 교내 연구비
3. 정부·대학의 보조금 및 기타 기부금
4. 기타 수입
(조 신설 2006.12.4)

제16조(회계년도 및 예산 결산) ① 본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. (개정 2006.12.4)
② 삭제 (2006.12.4)
③ 매 회계연도의 예산 및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(개정 2006.12.4)
(조 개정 2006.12.4)

제5장 보칙
(신설 2006.12.4)

제17조(규정 개정 및 해산) ① 본 연구소의 규정 개정 및 해산은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다.
② 연구소가 해산되는 경우에 그 재산은 상지대학교에 귀속된다.
(조 신설 2006.12.4)

제18조(준용)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교수·연구원임용규정 및 부설연구소(원)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.
(조 신설 2006.12.4)

제19조(지침 등) 연구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.

(조 신설 2006.12.4)

부칙

이 규정은 2001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81401-1080, 2003.12.22)

이 규정은 2003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과-1143 2006.12.4)

이 규정은 2006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.